

"시대를 열어가는 담대한 지성, 부산대학교"

2023년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사업 신규 장학생 선발계획(안)

2023. 4.

학 생 과

I 개요

- ☐ 장학금명 :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
- ☐ 목적 : 교육기회 양극화 해소 및 교육소외계층의 교육기회 확대
- ☐ 한국장학재단 2023년 장학생 선발 및 지원 계획

(단위: 명, 만원)

유 형		우리대 학 배 정 인 원	장학금액 (학기당)	지 원 기 간	지 원 방 식
신규 선발	사회적 배려계층 생활비 지원	10	150	2개 학기 (' 23년 1학기 ~ 2학기)	생활비 무상보조

II 자체 선발계획 (안)

- ☐ 지원대상
 - 대한민국 국적의 재학생(신입생 포함, 초과학기 제외)
 - '23년 1학기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2개학기 이상인 자
 - 신청자격 : 학자금지원 3구간 이하인 사회적 배려계층* 가정의 대학생
 - * 장애인 가정, 새터민(탈북주민)가정, 가정외보호 시설 출신자, 학생가장 본인, 조손가정 자녀,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 가정의 본인 또는 자녀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라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가능한 자, 다문화가정, 주거비 지원 필요자, 기타 사회적배려계층
 - 추천 불가자 : '23년 1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장학생 및 '23년 1학기가 졸업학기인 학생
 - 기타사항 : 2023년 한국장학재단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사업 업무 처리기준에 의거
- ☐ 지원기간 : 2개 학기('23년 1학기부터 '23년 2학기까지)
- ☐ 지원내용 : 학기당 150만원(생활비 무상보조, 정액지원)

□ 심사기준

- (학자금지원구간) 2023년 1학기 학자금지원구간 3구간 이하인 자
※ 계속장학생은 학자금지원구간 기준 없음
- (성적기준)
 - 신규장학생 : 선발 성적기준 없음
 - 신규장학생 추천 우선순위
: ① 학자금지원구간 낮은 순, ② 전체 평균평점 우수자 순,
③ 전체 이수학점이 많은 순 ④ 직전학기 성적 우수자 순
 - 계속장학생('23년 2학기)은 직전 정규학기('23년 1학기) 백분위 점수
70점 이상 성적기준 적용
- 생활비 형식의 무상보조 지원금을 받고 있지 않은 학생 우선추천 권고

□ 배정기준 및 추천인원 : 총 10명

- 단과대학별 배정(안)
 - 단과대학 순*에 따라 단과대학별 배정

* 부산대학교 학칙 【별표1】 의 단과대학순(매년 순차적 배정)

연번	단과대학(학칙 순)	배정인원	비고
1	인문대학	2022년 배정(1)	
2	사회과학대학	2022년 배정(1)	※ 의과대학 추천포기로 추가배정
3	자연과학대학	1	
4	공과대학	1	
5	사범대학	1	
6	경제통상대학	1	
7	경영대학	1	
8	약학대학	1	
9	생활과학대학	1	
10	예술대학	1	
11	간호대학	1	
12	나노과학기술대학	1	
13	생명자원과학대학	2021년 배정(1)	
14	의과대학	2022년 배정(1)	2022년 장학생 추천 포기 [관련 : 의과대학-10146(2022.04.18.)]
15	정보의생명공학대학	2022년 배정(1)	
합 계		10	

- 단과대학별 추천자(각 1명)를 한국장학재단에 최종 추천
- 배정된 단과대학에 추천대상자가 없을 경우, 차순위 단과대학에 재배정하여 선발
- 계속장학생 추천 및 장학생 추가(대체) 선발
 - '23년 2학기 계속장학생 심사 및 장학금 지급 이후 대학별 탈락* 인원은 한국장학재단 일정에 따라 장학생 대체 추천 가능
 - * 학적변동, 성적미달 및 선발자격 미달(주거환경 변동) 등
 - 2학기 추가(대체) 추천 장학생은 1개 학기 일시지원
 - 계속장학생 기준 미충족으로 대체 선발할 경우, 1학기 기 배정 대학의 후보자에서 우선 선발*
 - * 1학기 선발완료된 대학의 후보자 중 ① 기준미충족으로 탈락한 장학생이 발생한 대학의 추천자, ② 학자금지원구간이 낮은 자, ③ 직전학기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선발하고 기존 대학에서 후보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 대학에서 선발
- 계속자 추천 및 대체선발 등은 추후 한국장학재단 선발계획 및 일정에 따름

□ 제출서류

- ※ 【붙임1】 한국장학재단 업무처리기준 내 [붙임1. 장학생 자격 및 제출서류] 참조
- 장애인 가정 :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, 가족관계증명서 등
- 새터민(탈북주민) 가정 :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, 가족관계증명서(자녀의 경우)
- 가정외보호 시설 출신자 : 가정외보호 시설 출신 증명서(아동양육 시설 출신확인서, 재원증명서, 입소확인서 등)
- 학생가장 본인, 조손가정 자녀 :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사실 관계 확인서(주민센터 복지사 확인) 등
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: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계층 확인서,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통지서 등
- 한부모 가족 :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라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

- 다문화 가정
 - [한국 국적 취득 전] (지원자)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
(부 또는 모)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
 - [한국 국적 취득 후] (지원자)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
(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) 기본증명서(상세)
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※ 단, 기본증명서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 제적등본 제출
- 주거비 지원 필요자
 - 전(월)세 주거 : 임대차계약서, 주민등록등본
 - 기숙사, 고시원 등 : 입실 확인서, 사업자등록증, 주민등록등본
※ 임차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, 가족관계증명서 제출
- 기타 사회적배려계층 : 신청 자격 관련 증빙서류 대학 보관 필수
※ 상기의 증빙서류 종류 외 단과대학별 자체 추천기준에 따라 신청
자격별 필요한 공식적인 서류인 경우 인정

III 장학금 반환

□ 장학금 환수

- 장학생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
 - 장학생 자격상실 및 기 지급된 장학금 전액 환수

□ 장학금 반환

- (계속장학생) 계속지원 조건 기준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
 - '23년 2학기 장학금 계속지원 중단 및 장학생 자격상실
※ 장학생 자격의 지속여부 확인을 위해 계속장학금 지원시 증빙서류 재확인 필요
- (학적변동) 군입대, 질병, 출산, 어학연수,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
등으로 휴학, 자퇴, 타 대학 편입, 재입학 등 학적이 변경될 경우
 - 해당학기 장학금 반환 및 장학생 자격 상실

□ 학적변동에 따른 반환 금액

- 장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자격이 상실될 경우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
 - 「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」 제6조 제2항에 준하여 반환액 산정

반환사유 발생일	반환기준	반환 금액 산정(예)
학기 개시일부터 30일 경과 전	장학금의 5/6 해당액	1,250,000원 (1,500,000원 × 5/6)
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	장학금의 2/3 해당액	1,000,000원 (1,500,000원 × 2/3)
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	장학금의 1/2 해당액	750,000원 (1,500,000원 × 1/2)
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	반환하지 아니함	반환금 없음

IV 향후 추진 일정

□ 추진 일정

- (단과대학) 장학생 추천 : '23. 4. 11. (화) ~ 4. 19.(수)
- (학생) 추천대상자 온라인 신청 : '23. 4. 20. (목) ~ 4. 21. (금)
- (학생과) 최종 대학추천 : '23. 4. 25. (화)까지
- (재단) 최종 선발 및 장학금 지급 : '23. 4월 말(예정)

붙임 : '23년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1부. 끝.

학생과